

지역에너지 활성화 방안

글/우영호(상공자원부 에너지관리과 사무관)

1. 머리말

그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에너지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에 우선 목표를 부여했던 관계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역할을 살펴보면 전자는 계획 수립을 주임무로, 후자는 거의 단순집행자로서의 위치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상호간의 이러한 역할은 국가전체적으로 볼 때에, 공급 위주의 정책목표달성을 큰 차질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경제 등 사회 전 분야에서 급속히 진행되는 지방화 추세는 에너지분야에서도 그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GREEN ROUND로 통칭되는 국제환경문제의 대두 등 세계 에너지 여건의 변화로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에너지소비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국제적인 규제가 가해질 것은 명약관화한 것으로, 그 첫번째 조치가 기후변화협약

발효('94. 3. 21)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기존의 원활한 에너지공급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해 소위 환경친화형 에너지절약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 그동안 중앙정부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지방의 창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공동의 정책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지역에너지 활성화계획”은 시의 적적하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이 될 것이다.

2. 지역에너지계획의 활성화 방안

지역에너지계획은 궁극적으로 지역에너지사업으로 시현되며 그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수립을 위하여 '94년도에 시범시·도 3개를 선정, 계

획수립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일부 (시·도당 1억원 범위내)를 지원하고 이를 시·도의 계획을 여타 시·도에 보급하여 '95년까지 15개 시·도의 계획수립을 완료하도록 하며, 시·군에 대한 계획수립의 지원 및 에너지절약 시범도시를 육성한 계획이다.

둘째,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와 연계, 「에너지절약형 지역개발 사업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시·도 및 용역기관에 개발된 모형을 보급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 공단 조성시 에너지절약형 개발을 유도한다.

셋째, 이상의 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상공자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 에너지관리공단내 지역에너지계획의 지원 기능을 수행할 부서지정, 지방에너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연수실시 등 추진체제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끝으로 시·도지사가 주관하는 폐열활용 및 쓰레기소각열 이용사

업 등 지역에너지사업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기술지원 및 전문가의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3. 지역에너지계획의 효과

이상과 같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실시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대략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지역적 실험으로 국가에너지계획의 실패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문제는 불확실성과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급계획에 있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에너지 계획에 전국가의 운명을 걸고 있는 상황 아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판단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시행착오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에너지계획은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에너지정책을 독창적으로 실시해 봄으로써 각 대안의 실시결과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검증받은 정책을 다른 지방단체가 채택하여 발전시킴으로써 정책의 개선과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다.

둘째,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의 부존자원과 미이용 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하여 자주적 공급률을 제고할 수 있다. 국가에너지계획 체계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피동적이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주적 권한이 주어진 지역에너지계획 체계에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정책개발의욕과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다.

셋째, 지역의 환경기준에 알맞는 에너지소비구조를 창출할 수

있다. 지역에너지계획은 지역의 특성과 조건에 맞는 수급구조를 마련할 수 있어 지역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

넷째, 지역에너지계획제도는 각 지역의 구체적인 에너지수요가 일목요연하게 파악됨으로써 중앙정부가 장기적인 에너지 공급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용이하다. 지금까지의 국가에너지계획은 지역수요 조사없이 총량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정책을 펼쳐오는데 그쳤다

다섯째, 에너지이용 효율의 향상이나 실질적인 에너지소비절약 시책의 추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국가에너지계획 체계 아래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설정한 에너지소비절약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매년 반복적이고 단순한 시책의 전개에만 매달리기에도 바쁠뿐 아니라 그럴

듯한 지상계획의 수립으로 가시적 실속주의 병폐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에너지계획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산업 구조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실천적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책과 에너지 소비절약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맺음말

에너지분야의 종합과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의 모태가 될 지역에너지계획은 향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에너지분야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주요한 시책으로 발전할 것을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너지계획 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실천이 계속될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정부의 노력과 특히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 제고도 확보되어야겠다.

절약은 습관

손쉬운 에너지절약 10가지

